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8. 11 선고 2021가단21288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7. 14.

판 결 선 고 2021. 8. 11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 2019. 7. 19.자로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9,828,039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9,828,0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9조 제3항 제2호)

판사 박수현

별지